

사회봉사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: 2001. 06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개정 : 2015. 09. 11.

개정 : 2022. 08. 05.

담당 : 지역사회임팩트센터(02-950-5465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심의사항)	제3조(구성)	제4조(위원장)
제5조(임기)	제6조(회의 소집과 의결)	제7조(회의록)	제8조(업무관장)
제9조(시행세칙)			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사회봉사운영위원회(이하 "본 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학생 및 교직원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심의사항) 사회봉사운영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·직원·교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수립
2.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연구
3.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및 지원
4.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및 지원
5. 대학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연구 및 지원

제3조(구성)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 관리규정 제4조 내지 7조에 따른다.(개정15.09.11)

제4조(위원장) 삭제(개정15.09.11)

제5조(임기) 삭제(개정15.09.11)

제6조(회의 소집과 의결) 삭제(개정15.09.11)

제7조(회의록) 삭제(개정15.09.11)

제8조(업무관장)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지역사회임팩트센터에서 관장한다.(개정15.09.11)(개정 2022.

08.05)

제9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